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2022. 12.

KBIZ 중소기업중앙회

차 례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 개요	1
3) 조사 내용	1
4) 응답자 특성	2
5) 주의사항	2

II 조사 결과

1) 부담금 지출 유무	3
2) 부담금 적정성	5
2-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적정성	7
2-2) 물이용부담금 적정성	8
2-3) 석면피해구제부담금 적정성	9
2-4)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적정성	10
2-5) 환경개선부담금 적정성	11
2-6)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적정성	12
2-7) 폐기물처분부담금 적정성	13
2-8) 재활용부과금 적정성	14
2-9)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적정성	15
2-1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적정성	16
2-11) 교통유발부담금 적정성	17
2-12)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정성	18
2-13)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적정성	19
2-14) 폐기물부담금 적정성	20
3)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21
4) 정부 부담금 운용 평가	23
4-1) 부정적 평가 이유	24
5) 부담금 제도 개선 사항	25
6) 매출액 대비 2022년 지출한 부담금 비중	26
7) 2022년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	27
8) 부담금 총액의 부담 정도	28
9) 부담금 납부 애로 경험 여부	29
9-1) 부담금 납부 시 겪은 애로사항	30
10) 부담금 제도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31
[별첨] 정부 부처별 부담금	32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함

2)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1) 조사대상	중소기업
2) 표본수	300개사
3)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따른 전화 조사
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5.66\%$
5) 조사기간	2022. 11. 23. ~ 11. 29.
6) 조사기관	(주)글로벌리서치

3) 조사 내용

- 주요 부담금별 지출 유무
- 지출한 부담금별 적정성 검토
-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 정부 부담금 운용 평가
- 정부 부담금 운용 부정적 평가 이유
- 부담금제도 개선 사항
- 매출액 대비 2022년 지출한 부담금 비중
- 2022년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
- 부담금 총액의 부담 정도
- 부담금 납부 애로 경험 여부 / 애로사항
- 부담금 제도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4) 응답기업 특성

○ 조사에 참여한 300개 응답 업체의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업체 수(개)	비중 (%)
전 체		(300)	100.0
업종	제조업	(211)	70.3
	비제조업	(89)	29.7
소재지	수도권	(149)	49.7
	비수도권	(151)	50.3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16.7
	10~50명 미만	(107)	35.7
	50~100명 미만	(97)	32.3
	100명 이상	(46)	15.3
매출액	100억 미만	(102)	34.0
	100~200억 미만	(97)	32.3
	200억 이상	(101)	33.7

5) 주의사항

- 조사결과 해석 시 해당 집단의 표본수가 30표본 미만인 경우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복수응답을 제외한 항목의 그림이나 표에서 응답 비율의 합이 100.0%가 아닌 경우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수치이므로 오류가 아님
- 응답비율이 0인 경우 '-로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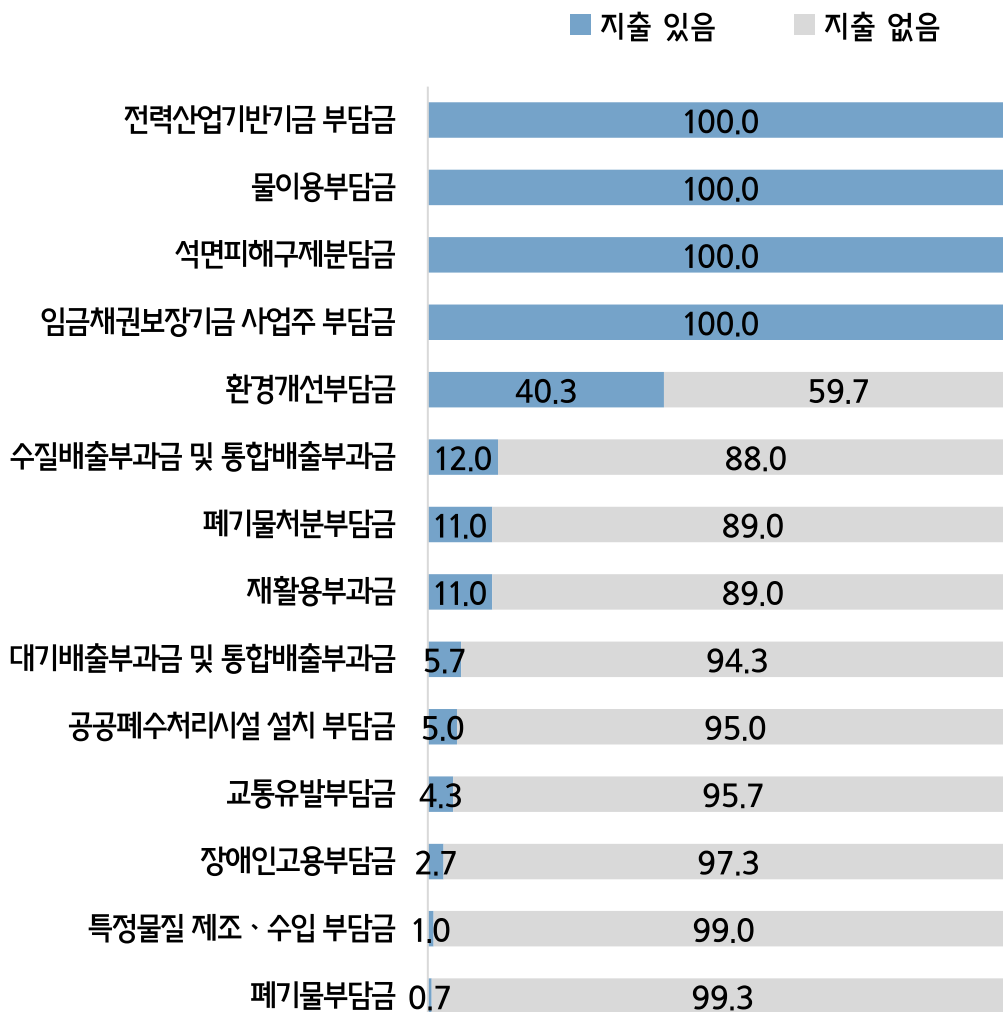
Ⅱ 조사 결과

1) 부담금 지출 유무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을 제외(당연지출)하고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40.3%)임. 다음은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12.0%), ‘폐기물처분부담금’(11.0%)과 ‘재활용부과금’(11.0%)으로 조사됨

[그림 1] 항목별 부담금 지출 유무

(base : 전체(n=300), 단위 : %)



[표 1] 항목별 부담금 지출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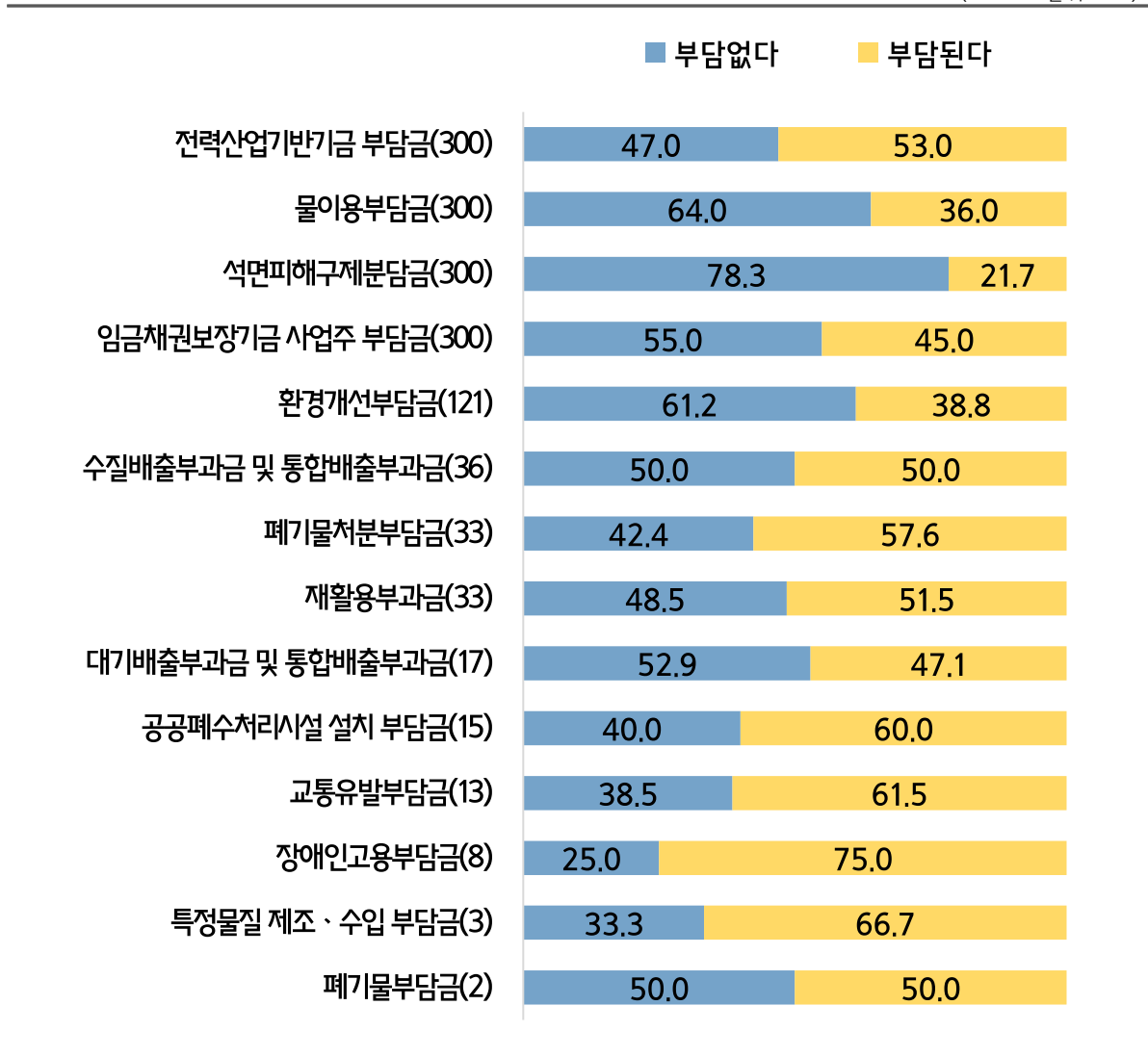
NO	항 목	사례수	지출	미지출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00)	100.0	-
2	물이용부담금		100.0	-
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00.0	-
4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100.0	-
5	환경개선부담금		40.3	59.7
6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12.0	88.0
7	폐기물처분부담금		11.0	89.0
8	재활용부과금		11.0	89.0
9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5.7	94.3
1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5.0	95.0
11	교통유발부담금		4.3	95.7
12	장애인고용부담금		2.7	97.3
13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1.0	99.0
14	폐기물부담금		0.7	99.3

2) 부담금 적정성

- 14개 부담금별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장애인고용부담금’(75.0%) 부담이 가장 컸으며, 다음은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66.7%), ‘교통유발부담금’(61.5%),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60.0%) 순으로 부담을 느낌

[그림 2] 항목별 부담금 적정성

(base : 단위 : %)



[표 2] 항목별 부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NO	항 목	사례수	부담없다	부담된다	4점 평균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00)	47.0	53.0	2.52
2	물이용부담금	(300)	64.0	36.0	2.28
3	석면피해구제부담금	(300)	78.3	21.7	1.99
4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300)	55.0	45.0	2.40
5	환경개선부담금	(121)	61.2	38.8	2.36
6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36)	50.0	50.0	2.53
7	폐기물처분부담금	(33)	42.4	57.6	2.70
8	재활용부과금	(33)	48.5	51.5	2.64
9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17)	52.9	47.1	2.41
1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5)	40.0	60.0	2.60
11	교통유발부담금	(13)	38.5	61.5	2.54
12	장애인고용부담금	(8)	25.0	75.0	2.75
13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3)	33.3	66.7	2.33
14	폐기물부담금	(2)	50.0	50.0	2.50

* 전혀 부담없다(1), 부담없다(2), 부담된다(3), 매우 부담된다(4) 4점 척도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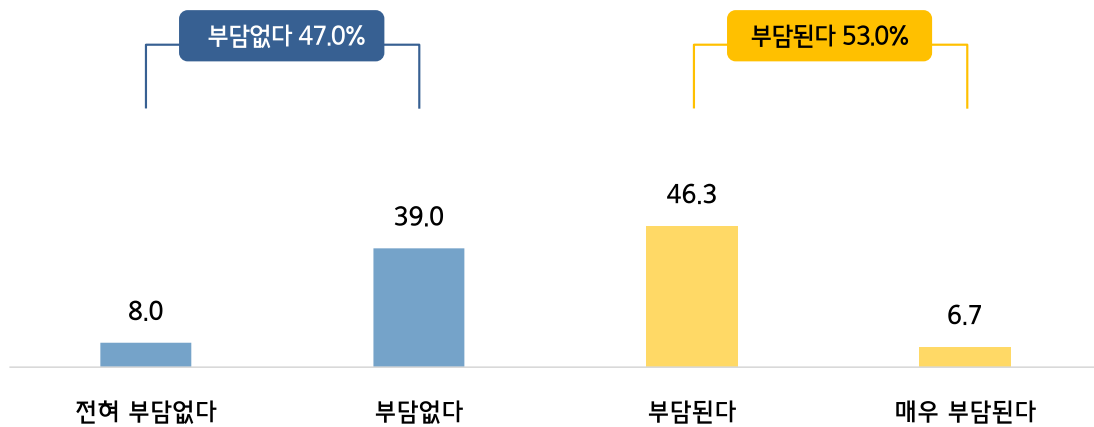
* 부담없다 = 전혀 부담없다(1)+부담없다(2) / 부담된다 = 부담된다(3)+매우 부담된다(4)

2-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적정성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된다’ 53.0%(부담된다 46.3% + 매우 부담된다 6.7%)로 나타남
- 업종별 결과 제조업이 비제조업 대비 ‘부담된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소재지별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부담을 더 느끼고 있음
- 매출액이 높을수록 ‘부담된다’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적정성

(base : 전체(n=300), 단위 : %)



[표 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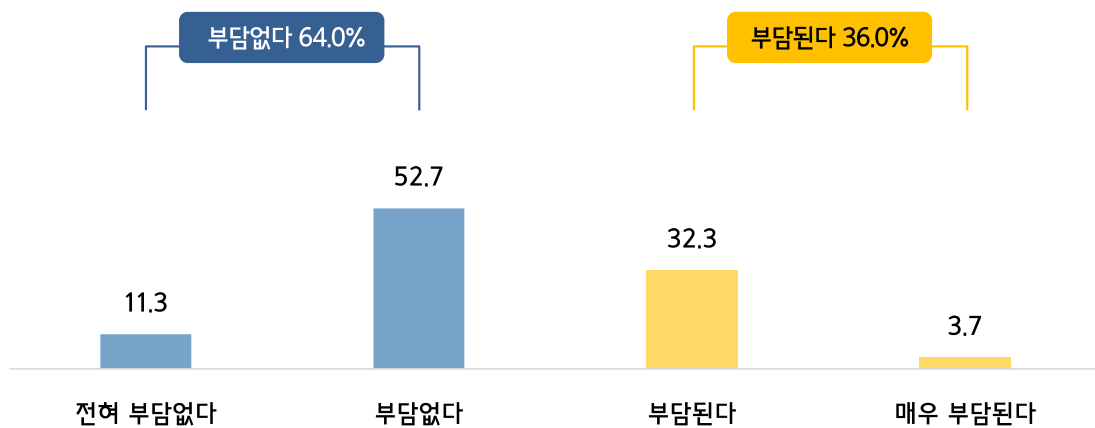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부담 없다 ①	부담 없다 ②	부담 된다 ③	매우 부담 된다 ④	부담 없다 (①+②)	부담 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 체	(300)	8.0	39.0	46.3	6.7	47.0	53.0	2.52	
업종	제조업	(211)	6.6	29.9	54.0	9.5	36.5	63.5	2.66
	비제조업	(89)	11.2	60.7	28.1	-	71.9	28.1	2.17
소재지	수도권	(149)	10.7	41.6	43.6	4.0	52.3	47.7	2.41
	비수도권	(151)	5.3	36.4	49.0	9.3	41.7	58.3	2.62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14.0	52.0	34.0	-	66.0	34.0	2.20
	10~50명 미만	(107)	6.5	40.2	43.0	10.3	46.7	53.3	2.57
	50~100명 미만	(97)	7.2	33.0	55.7	4.1	40.2	59.8	2.57
	100명 이상	(46)	6.5	34.8	47.8	10.9	41.3	58.7	2.63
매출액	100억 미만	(102)	10.8	44.1	43.1	2.0	54.9	45.1	2.36
	100~200억 미만	(97)	7.2	39.2	42.3	11.3	46.4	53.6	2.58
	200억 이상	(101)	5.9	33.7	53.5	6.9	39.6	60.4	2.61

2-2) 물이용부담금 적정성

- 물이용부담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없다’ 64.0%(전혀 부담없다 11.3% + 부담없다 52.7%)로 나타남
- 업종별 결과, 제조업은 비제조업 대비 ‘부담된다’는 응답이 3배 이상 높았음
- 매출액이 높을수록 물이용부담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았음

[그림 4] 물이용부담금 적정성

(base : 전체(n=500), 단위 : %)



[표 4] 물이용부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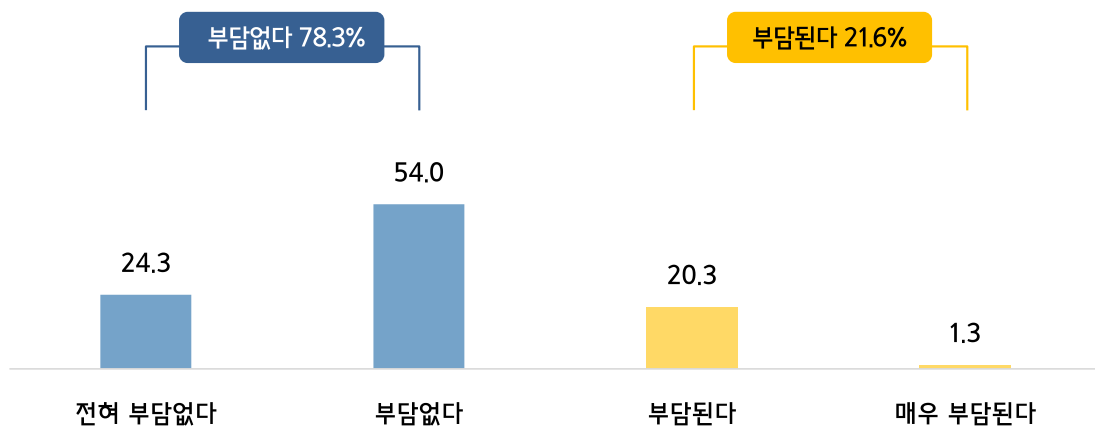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부담 없다 ①	부담 없다 ②	부담 된다 ③	매우 부담 된다 ④	부담 없다 (①+②)	부담 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 체	(300)	11.3	52.7	32.3	3.7	64.0	36.0	2.28	
업종	제조업	(211)	8.5	46.0	40.3	5.2	54.5	45.5	2.42
	비제조업	(89)	18.0	68.5	13.5	-	86.5	13.5	1.96
소재지	수도권	(149)	15.4	53.7	29.5	1.3	69.1	30.9	2.17
	비수도권	(151)	7.3	51.7	35.1	6.0	58.9	41.1	2.40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20.0	66.0	14.0	-	86.0	14.0	1.94
	10~50명 미만	(107)	11.2	46.7	33.6	8.4	57.9	42.1	2.39
	50~100명 미만	(97)	10.3	49.5	39.2	1.0	59.8	40.2	2.31
	100명 이상	(46)	4.3	58.7	34.8	2.2	63.0	37.0	2.35
매출액	100억 미만	(102)	16.7	61.8	20.6	1.0	78.4	21.6	2.06
	100~200억 미만	(97)	10.3	47.4	35.1	7.2	57.7	42.3	2.39
	200억 이상	(101)	6.9	48.5	41.6	3.0	55.4	44.6	2.41

2-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적정성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없다’ 78.3%(전혀 부담없다 24.3% + 부담없다 54.0%)로 나타남
- 업종별 결과, 비제조업은 93.3%가 부담이 없다고 응답함
- 매출액이 높을수록 부담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높게 조사됨

[그림 5]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적정성

(base : 전체(n=300), 단위 : %)



[표 5]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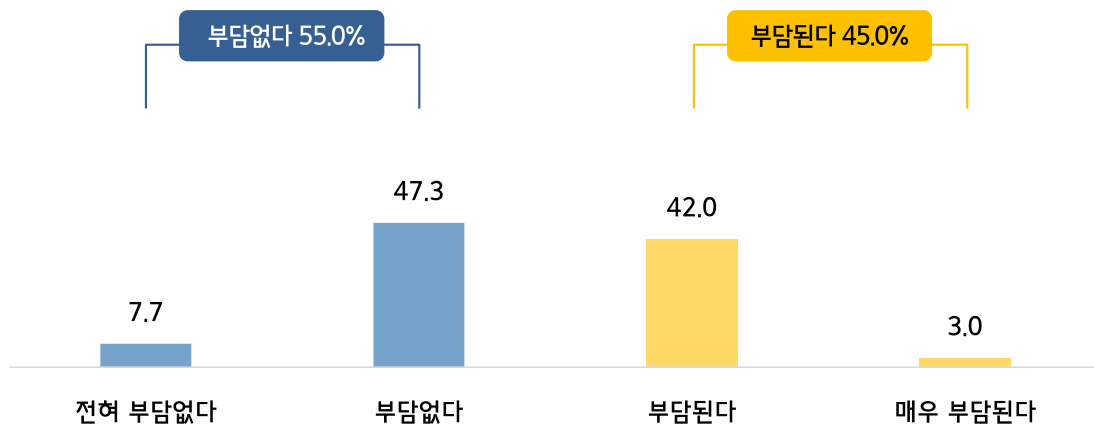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부담없다 ①	부담없다 ②	부담된다 ③	매우 부담된다 ④	부담없다 (①+②)	부담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체	(300)	24.3	54.0	20.3	1.3	78.3	21.7	1.99	
업종	제조업	(211)	16.1	55.9	26.1	1.9	72.0	28.0	2.14
	비제조업	(89)	43.8	49.4	6.7	-	93.3	6.7	1.63
소재지	수도권	(149)	29.5	52.3	17.4	0.7	81.9	18.1	1.89
	비수도권	(151)	19.2	55.6	23.2	2.0	74.8	25.2	2.08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36.0	56.0	8.0	-	92.0	8.0	1.72
	10~50명 미만	(107)	22.4	56.1	18.7	2.8	78.5	21.5	2.02
	50~100명 미만	(97)	21.6	47.4	29.9	1.0	69.1	30.9	2.10
	100명 이상	(46)	21.7	60.9	17.4	-	82.6	17.4	1.96
매출액	100억 미만	(102)	31.4	54.9	13.7	-	86.3	13.7	1.82
	100~200억 미만	(97)	22.7	53.6	20.6	3.1	76.3	23.7	2.04
	200억 이상	(101)	18.8	53.5	26.7	1.0	72.3	27.7	2.10

2-4)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적정성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없다’ 55.0%(전혀 부담없다 7.7% + 부담없다 47.3%)로 나타남
- 업종별 결과 제조업이 비제조업 대비, 소재지별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 대비 ‘부담된다’ 응답이 높았음
- 매출액이 높을수록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타남

[그림 6]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적정성

(base : 전체(n=300), 단위 : %)



[표 6]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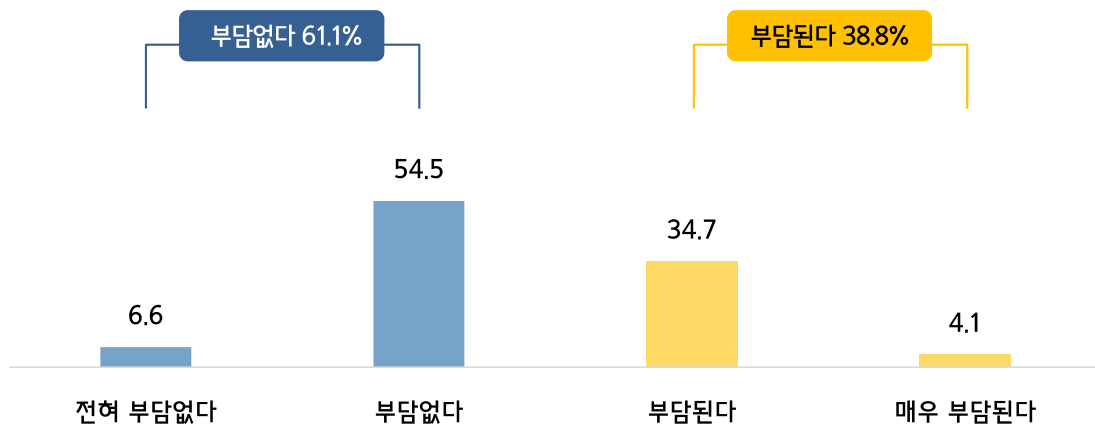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부담없다 ①	부담없다 ②	부담된다 ③	매우 부담된다 ④	부담없다 (①+②)	부담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체	(300)	7.7	47.3	42.0	3.0	55.0	45.0	2.40	
업종	제조업	(211)	6.6	42.2	46.9	4.3	48.8	51.2	2.49
	비제조업	(89)	10.1	59.6	30.3	-	69.7	30.3	2.20
소재지	수도권	(149)	10.7	52.3	35.6	1.3	63.1	36.9	2.28
	비수도권	(151)	4.6	42.4	48.3	4.6	47.0	53.0	2.53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18.0	58.0	24.0	-	76.0	24.0	2.06
	10~50명 미만	(107)	6.5	45.8	43.0	4.7	52.3	47.7	2.46
	50~100명 미만	(97)	5.2	43.3	49.5	2.1	48.5	51.5	2.48
	100명 이상	(46)	4.3	47.8	43.5	4.3	52.2	47.8	2.48
매출액	100억 미만	(102)	10.8	51.0	37.3	1.0	61.8	38.2	2.28
	100~200억 미만	(97)	7.2	46.4	41.2	5.2	53.6	46.4	2.44
	200억 이상	(101)	5.0	44.6	47.5	3.0	49.5	50.5	2.49

2-5) 환경개선부담금 적정성

-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없다’ 61.1%(전혀 부담없다 6.6% + 부담없다 54.5%)로 나타남
- 소재지별 결과,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약 2배 높음
- 종업원 수 100명 미만 기업은 ‘부담된다’는 응답이 35% 이상인 가운데, 100명 이상 기업은 8.3%로 차이를 보임

[그림 7] 환경개선부담금 적정성

(base : n=121, 단위 : %)



[표 7] 환경개선부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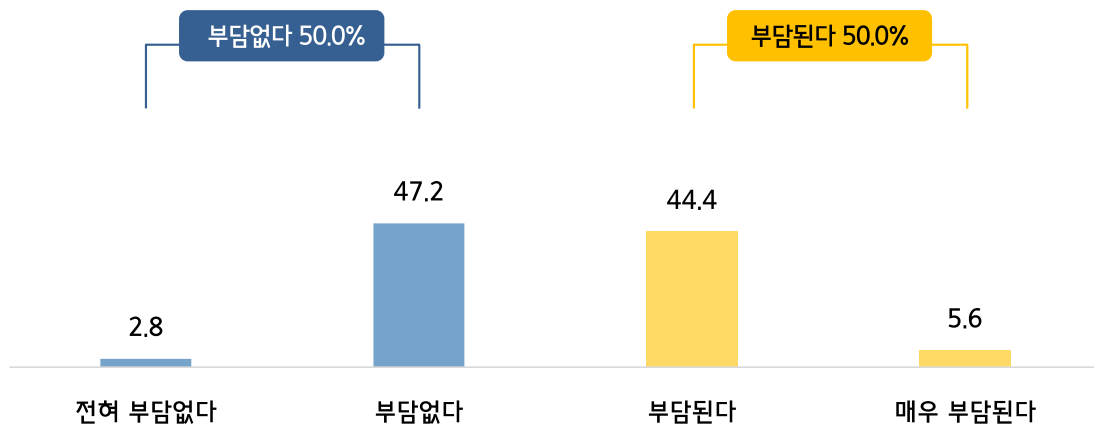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부담 없다 ①	부담 없다 ②	부담 된다 ③	매우 부담 된다 ④	부담 없다 (①+②)	부담 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 체	(121)	6.6	54.5	34.7	4.1	61.2	38.8	2.36	
업종	제조업	(92)	6.5	54.3	33.7	5.4	60.9	39.1	2.38
	비제조업	(29)	6.9	55.2	37.9	-	62.1	37.9	2.31
소재지	수도권	(44)	9.1	65.9	25.0	-	75.0	25.0	2.16
	비수도권	(77)	5.2	48.1	40.3	6.5	53.2	46.8	2.48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19)	10.5	52.6	36.8	-	63.2	36.8	2.26
	10~50명 미만	(48)	6.3	47.9	35.4	10.4	54.2	45.8	2.50
	50~100명 미만	(42)	4.8	54.8	40.5	-	59.5	40.5	2.36
	100명 이상	(12)	8.3	83.3	8.3	-	91.7	8.3	2.00
매출액	100억 미만	(37)	5.4	54.1	40.5	-	59.5	40.5	2.35
	100~200억 미만	(53)	7.5	47.2	39.6	5.7	54.7	45.3	2.43
	200억 이상	(31)	6.5	67.7	19.4	6.5	74.2	25.8	2.26

2-6)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적정성

-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없다’ 50.0%(전혀 부담없다 2.8% + 부담없다 47.2%), ‘부담된다’ 50.0%(부담된다 44.4% + 매우 부담된다 5.6%)로 동일하게 조사됨
- 소재지별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 대비 부담을 크게 갖고 있음
- 종업원 수 10~50명 미만 기업은 ‘부담된다’ 응답이 76.9%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8]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적정성

(base : n=36, 단위 : %)



[표 8]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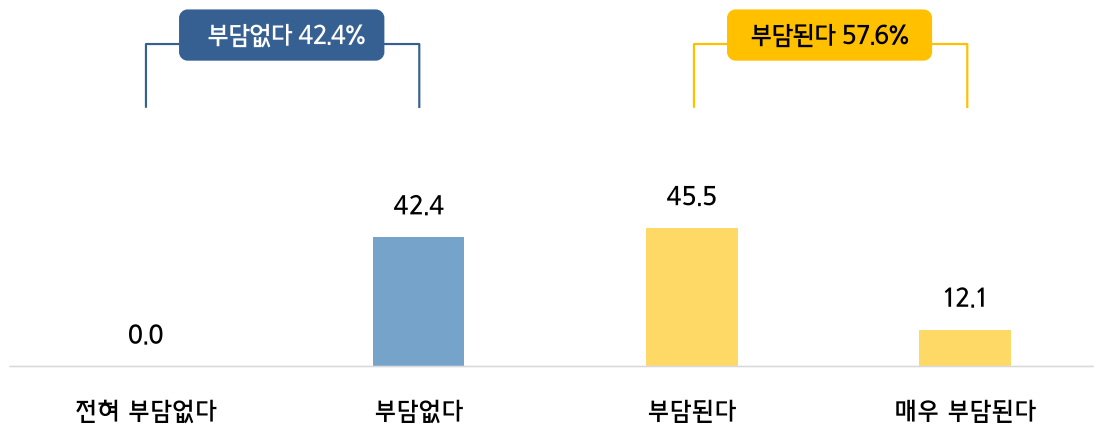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부담없다 ①	부담없다 ②	부담된다 ③	매우 부담된다 ④	부담없다 (①+②)	부담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체	(36)	2.8	47.2	44.4	5.6	50.0	50.0	2.53	
업종	제조업	(34)	2.9	47.1	44.1	5.9	50.0	50.0	2.53
	비제조업	(2)	-	50.0	50.0	-	50.0	50.0	2.50
소재지	수도권	(9)	11.1	55.6	33.3	-	66.7	33.3	2.22
	비수도권	(27)	-	44.4	48.1	7.4	44.4	55.6	2.63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3)	33.3	66.7	-	-	100.0	-	1.67
	10~50명 미만	(13)	-	23.1	61.5	15.4	23.1	76.9	2.92
	50~100명 미만	(11)	-	45.5	54.5	-	45.5	54.5	2.55
	100명 이상	(9)	-	77.8	22.2	-	77.8	22.2	2.22
매출액	100억 미만	(4)	-	75.0	25.0	-	75.0	25.0	2.25
	100~200억 미만	(13)	7.7	30.8	53.8	7.7	38.5	61.5	2.62
	200억 이상	(19)	-	52.6	42.1	5.3	52.6	47.4	2.53

2-7) 폐기물처분부담금 적정성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된다’ 57.6%(부담된다 45.5% + 매우 부담된다 12.1%)로 나타남
- 업종별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소재지별 결과는 비수도권이 수도권 대비 부담을 더 느끼고 있음
- 매출액이 100~20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76.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9] 폐기물처분부담금 적정성

(base : n=33, 단위 : %)



[표 9] 폐기물처분부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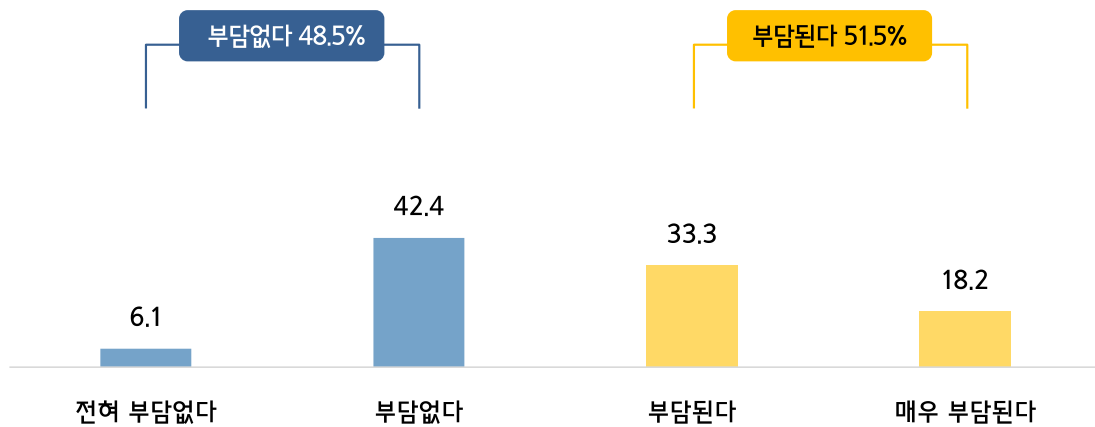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부담 없다 ①	부담 없다 ②	부담 된다 ③	매우 부담 된다 ④	부담 없다 (①+②)	부담 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 체	(33)	-	42.4	45.5	12.1	42.4	57.6	2.70	
업종	제조업	(26)	-	42.3	46.2	11.5	42.3	57.7	2.69
	비제조업	(7)	-	42.9	42.9	14.3	42.9	57.1	2.71
소재지	수도권	(15)	-	46.7	40.0	13.3	46.7	53.3	2.67
	비수도권	(18)	-	38.9	50.0	11.1	38.9	61.1	2.72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	-	80.0	20.0	-	80.0	20.0	2.20
	10~50명 미만	(10)	-	20.0	40.0	40.0	20.0	80.0	3.20
	50~100명 미만	(7)	-	-	100.0	-	-	100.0	3.00
	100명 이상	(11)	-	72.7	27.3	-	72.7	27.3	2.27
매출액	100억 미만	(5)	-	40.0	40.0	20.0	40.0	60.0	2.80
	100~200억 미만	(13)	-	23.1	61.5	15.4	23.1	76.9	2.92
	200억 이상	(15)	-	60.0	33.3	6.7	60.0	40.0	2.47

2-8) 재활용부과금 적정성

- 재활용부과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된다’ 51.5%(부담된다 33.3% + 매우 부담된다 18.2%)로 나타남
- 업종별 결과 제조업이 비제조업 대비 2배 이상 부담을 갖고 있음
- 매출액 100~200억 미만 기업의 경우 ‘부담된다’ 응답이 8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0] 재활용부과금 적정성

(base : n=33, 단위 : %)



[표 10] 재활용부과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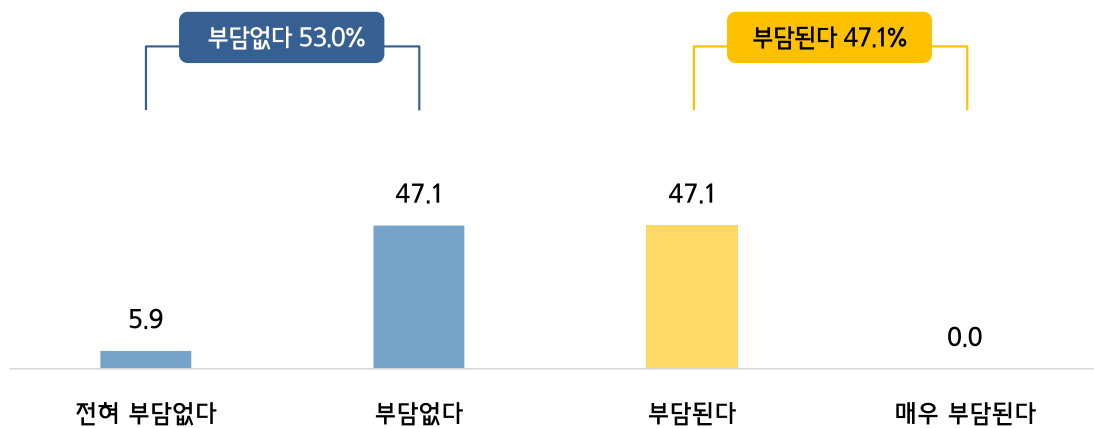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부담 없다 ①	부담 없다 ②	부담 된다 ③	매우 부담 된다 ④	부담 없다 (①+②)	부담 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 체	(33)	6.1	42.4	33.3	18.2	48.5	51.5	2.64	
업종	제조업	(29)	-	44.8	34.5	20.7	44.8	55.2	2.76
	비제조업	(4)	50.0	25.0	25.0	-	75.0	25.0	1.75
소재지	수도권	(12)	8.3	41.7	41.7	8.3	50.0	50.0	2.50
	비수도권	(21)	4.8	42.9	28.6	23.8	47.6	52.4	2.71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	-	-	-	-	-	-	-
	10~50명 미만	(10)	20.0	30.0	20.0	30.0	50.0	50.0	2.60
	50~100명 미만	(13)	-	38.5	53.8	7.7	38.5	61.5	2.69
	100명 이상	(10)	-	60.0	20.0	20.0	60.0	40.0	2.60
매출액	100억 미만	(8)	25.0	25.0	50.0	-	50.0	50.0	2.25
	100~200억 미만	(8)	-	12.5	37.5	50.0	12.5	87.5	3.38
	200억 이상	(17)	-	64.7	23.5	11.8	64.7	35.3	2.47

2-9)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적정성

-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없다’ 53.0%(전혀 부담없다 5.9% + 부담없다 47.1%)로 나타남
- 업종별 결과 제조업이 비제조업 대비, 소재지별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 대비 ‘부담된다’ 응답이 높았음

[그림 11]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적정성

(base : n=17, 단위 : %)



[표 11]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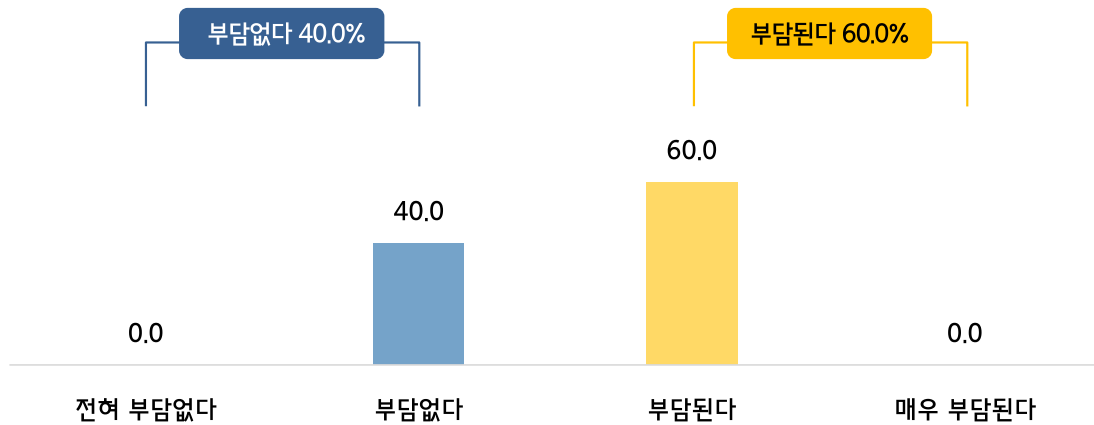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부담없다 ①	부담없다 ②	부담된다 ③	매우 부담된다 ④	부담없다 (①+②)	부담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체	(17)	5.9	47.1	47.1	-	52.9	47.1	2.41	
업종	제조업	(14)	7.1	42.9	50.0	-	50.0	50.0	2.43
	비제조업	(3)	-	66.7	33.3	-	66.7	33.3	2.33
소재지	수도권	(3)	-	100.0	-	-	100.0	-	2.00
	비수도권	(14)	7.1	35.7	57.1	-	42.9	57.1	2.50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2)	-	100.0	-	-	100.0	-	2.00
	10~50명 미만	(8)	-	25.0	75.0	-	25.0	75.0	2.75
	50~100명 미만	(4)	25.0	50.0	25.0	-	75.0	25.0	2.00
	100명 이상	(3)	-	66.7	33.3	-	66.7	33.3	2.33
매출액	100억 미만	(5)	-	60.0	40.0	-	60.0	40.0	2.40
	100~200억 미만	(4)	-	50.0	50.0	-	50.0	50.0	2.50
	200억 이상	(8)	12.5	37.5	50.0	-	50.0	50.0	2.38

2-1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적정성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된다’ 60.0%, ‘부담없다’ 40.0%로 나타남

[그림 1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적정성

(base : n=15, 단위 : %)



[표 1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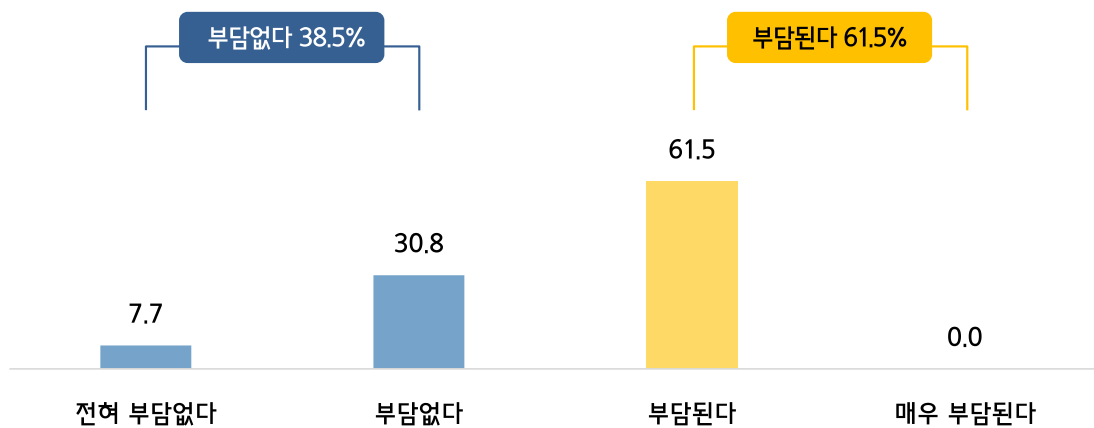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부담없다 ①	부담없다 ②	부담된다 ③	매우 부담된다 ④	부담없다 (①+②)	부담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체	(15)	-	40.0	60.0	-	40.0	60.0	2.60	
업종	제조업	(14)	-	42.9	57.1	-	42.9	57.1	2.57
	비제조업	(1)	-	-	100.0	-	-	100.0	3.00
소재지	수도권	(5)	-	20.0	80.0	-	20.0	80.0	2.80
	비수도권	(10)	-	50.0	50.0	-	50.0	50.0	2.50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1)	-	100.0	-	-	100.0	-	2.00
	10~50명 미만	(1)	-	-	100.0	-	-	100.0	3.00
	50~100명 미만	(8)	-	12.5	87.5	-	12.5	87.5	2.88
	100명 이상	(5)	-	80.0	20.0	-	80.0	20.0	2.20
매출액	100억 미만	(1)	-	-	100.0	-	-	100.0	3.00
	100~200억 미만	(7)	-	14.3	85.7	-	14.3	85.7	2.86
	200억 이상	(7)	-	71.4	28.6	-	71.4	28.6	2.29

2-11) 교통유발부담금 적정성

- 교통유발부담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된다’ 61.5%(부담된다 61.5% + 매우 부담된다 0.0%)로 나타남
- 업종별 결과 제조업이 비제조업 대비, 소재지별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 대비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13] 교통유발부담금 적정성

(base : n=13, 단위 : %)



[표 13] 교통유발부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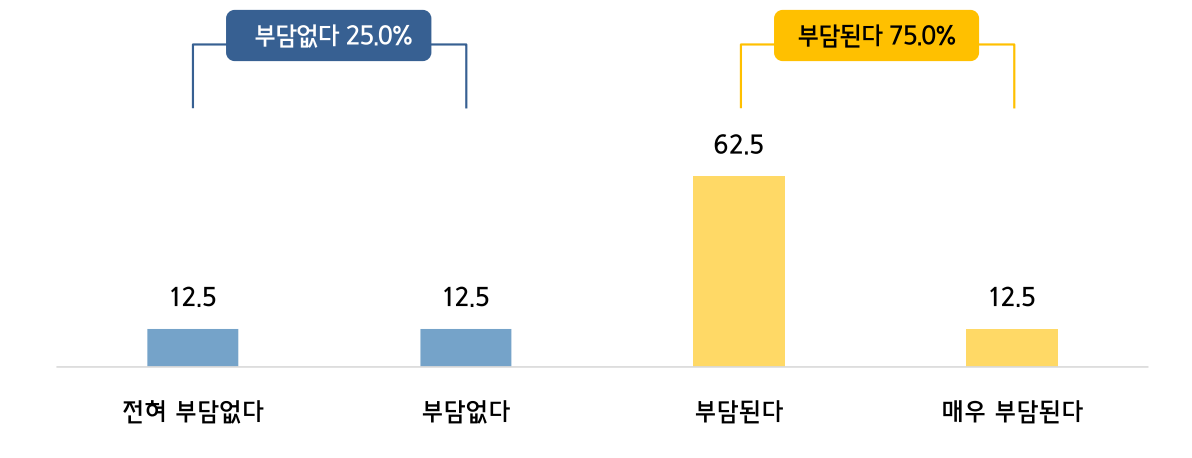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부담없다 ①	부담없다 ②	부담된다 ③	매우 부담된다 ④	부담없다 (①+②)	부담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체	(13)	7.7	30.8	61.5	-	38.5	61.5	2.54	
업종	제조업	(9)	-	33.3	66.7	-	33.3	66.7	2.67
	비제조업	(4)	25.0	25.0	50.0	-	50.0	50.0	2.25
소재지	수도권	(4)	-	75.0	25.0	-	75.0	25.0	2.25
	비수도권	(9)	11.1	11.1	77.8	-	22.2	77.8	2.67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1)	-	-	100.0	-	-	100.0	3.00
	10~50명 미만	(2)	50.0	-	50.0	-	50.0	50.0	2.00
	50~100명 미만	(8)	-	50.0	50.0	-	50.0	50.0	2.50
	100명 이상	(2)	-	-	100.0	-	-	100.0	3.00
매출액	100억 미만	(3)	33.3	-	66.7	-	33.3	66.7	2.33
	100~200억 미만	(6)	-	33.3	66.7	-	33.3	66.7	2.67
	200억 이상	(4)	-	50.0	50.0	-	50.0	50.0	2.50

2-12)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정성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된다’ 75.0%(부담된다 62.5% + 매우 부담된다 12.5%)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

[그림 14]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정성

(base : n=8, 단위 : %)



[표 14]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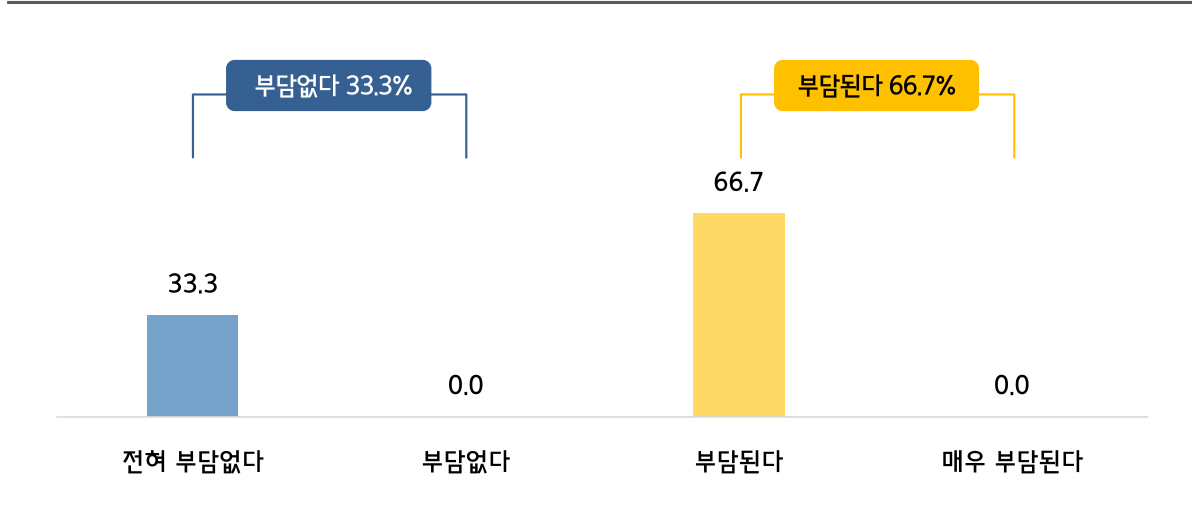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부담없다 ①	부담없다 ②	부담된다 ③	매우 부담된다 ④	부담없다 (①+②)	부담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 체	(8)	12.5	12.5	62.5	12.5	25.0	75.0	2.75	
업종	제조업	(8)	12.5	12.5	62.5	12.5	25.0	75.0	2.75
	비제조업	-	-	-	-	-	-	-	-
소재지	수도권	(3)	-	-	66.7	33.3	-	100.0	3.33
	비수도권	(5)	20.0	20.0	60.0	-	40.0	60.0	2.40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	-	-	-	-	-	-	-
	10~50명 미만	-	-	-	-	-	-	-	-
	50~100명 미만	-	-	-	-	-	-	-	-
	100명 이상	(8)	12.5	12.5	62.5	12.5	25.0	75.0	2.75
매출액	100억 미만	-	-	-	-	-	-	-	-
	100~200억 미만	(2)	50.0	-	50.0	-	50.0	50.0	2.00
	200억 이상	(6)	-	16.7	66.7	16.7	16.7	83.3	3.00

2-13)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적정성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된다’ 66.7%(부담된다 66.7% + 매우 부담된다 0.0%)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1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적정성

(base : n=3, 단위 : %)



[표 15]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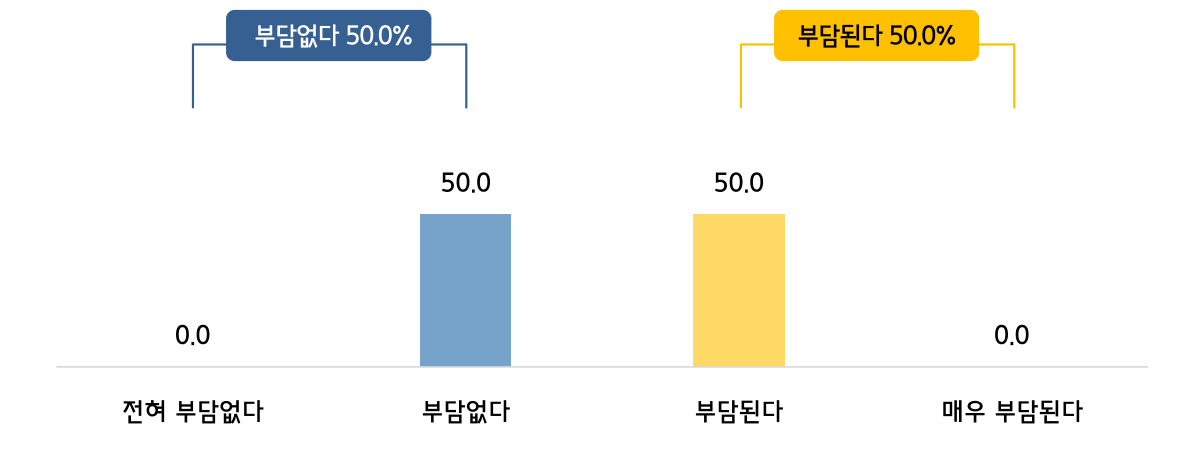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부담없다 ①	부담없다 ②	부담된다 ③	매우 부담된다 ④	부담없다 (①+②)	부담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체	(3)	33.3	-	66.7	-	33.3	66.7	2.33	
업종	제조업	(3)	33.3	-	66.7	-	33.3	66.7	2.33
	비제조업	-	-	-	-	-	-	-	-
소재지	수도권	(3)	33.3	-	66.7	-	33.3	66.7	2.33
	비수도권	-	-	-	-	-	-	-	-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	-	-	-	-	-	-	
	10~50명 미만	-	-	-	-	-	-	-	
	50~100명 미만	-	-	-	-	-	-	-	
	100명 이상	(3)	33.3	-	66.7	-	33.3	66.7	2.33
매출액	100억 미만	-	-	-	-	-	-	-	
	100~200억 미만	-	-	-	-	-	-	-	
	200억 이상	(3)	33.3	-	66.7	-	33.3	66.7	2.33

2-14) 폐기물부담금 적정성

- 폐기물부담금의 적정성 평가 결과, ‘부담없다’ 50.0%, ‘부담된다’ 50.0%로 동일하게 조사됨

[그림 16] 폐기물부담금 적정성

(base : n=2, 단위 : %)



[표 16] 폐기물부담금 적정성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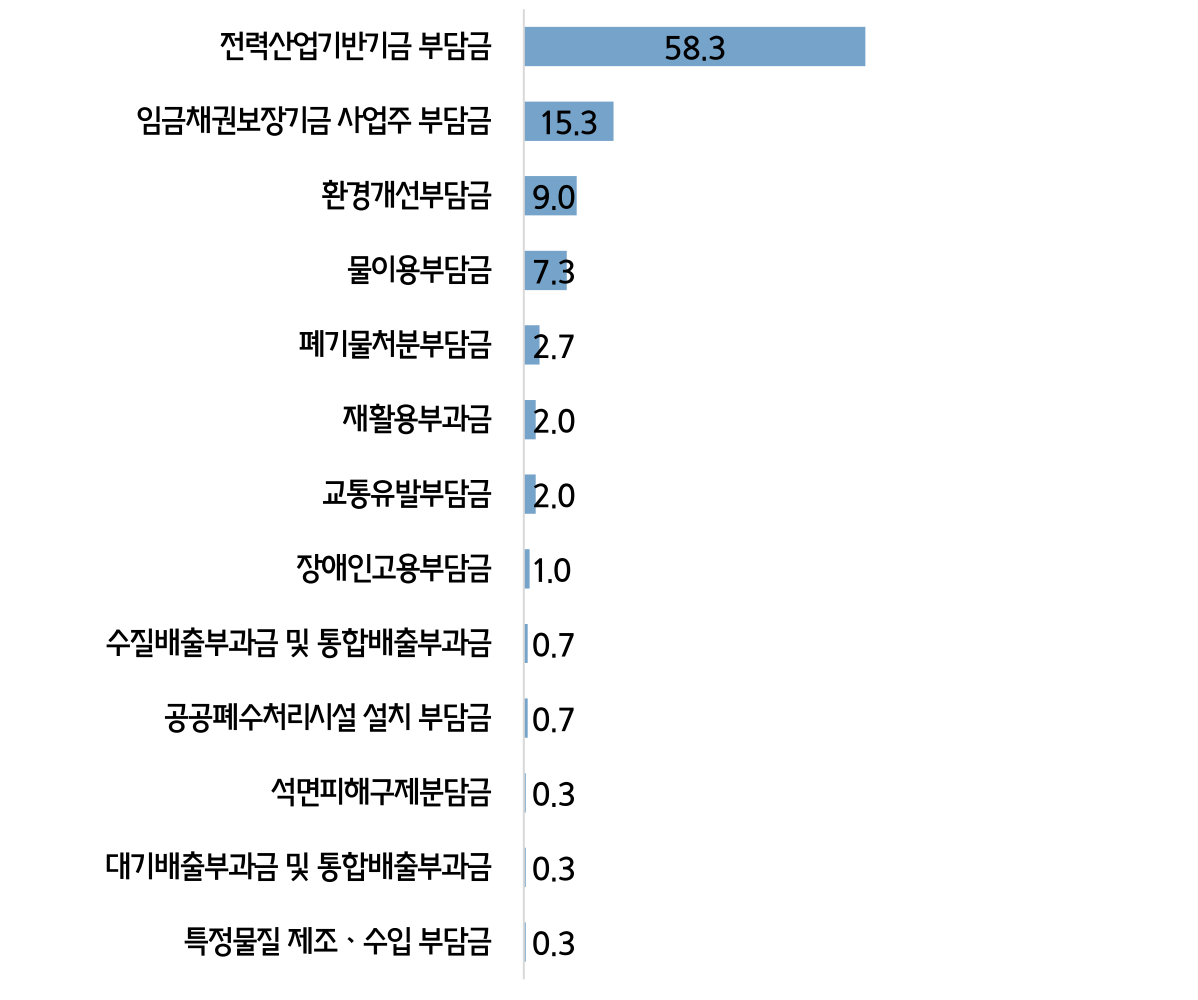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부담없다 ①	부담없다 ②	부담된다 ③	매우 부담된다 ④	부담없다 (①+②)	부담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체	(2)	-	50.0	50.0	-	50.0	50.0	2.50	
업종	제조업	(2)	-	50.0	50.0	-	50.0	50.0	2.50
	비제조업	-	-	-	-	-	-	-	-
소재지	수도권	(2)	-	50.0	50.0	-	50.0	50.0	2.50
	비수도권	-	-	-	-	-	-	-	-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	-	-	-	-	-	-	
	10~50명 미만	(1)	-	-	100.0	-	-	100.0	3.00
	50~100명 미만	-	-	-	-	-	-	-	
	100명 이상	(1)	-	100.0	-	-	100.0	-	2.00
매출액	100억 미만	-	-	-	-	-	-	-	
	100~200억 미만	(1)	-	-	100.0	-	-	100.0	3.00
	200억 이상	(1)	-	100.0	-	-	100.0	-	2.00

3)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58.3%)이며, 다음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15.3%), ‘환경개선부담금’(9.0%), ‘물이용 부담금’(7.3%) 순으로 나타남

[그림 17]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base : 전제(n=300), 단위 : %)



[표 17]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1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임금채권 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폐기물처 분부담금	재활용 부과금	교통유발 부담금	
전 체	(300)	58.3	15.3	9.0	7.3	2.7	2.0	2.0	
업종	제조업	(211)	62.6	14.2	6.2	8.5	1.9	2.4	0.9
	비제조업	(89)	48.3	18.0	15.7	4.5	4.5	1.1	4.5
소재지	수도권	(149)	69.8	11.4	6.0	6.0	2.0	1.3	0.7
	비수도권	(151)	47.0	19.2	11.9	8.6	3.3	2.6	3.3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60.0	12.0	16.0	4.0	4.0	-	4.0
	10~50명 미만	(107)	58.9	15.0	7.5	8.4	2.8	3.7	0.9
	50~100명 미만	(97)	57.7	15.5	8.2	10.3	2.1	2.1	2.1
	100명 이상	(46)	56.5	19.6	6.5	2.2	2.2	-	2.2
매출액	100억 미만	(102)	56.9	12.7	11.8	6.9	3.9	2.0	2.9
	100~200억 미만	(97)	55.7	15.5	9.3	10.3	2.1	3.1	1.0
	200억 이상	(101)	62.4	17.8	5.9	5.0	2.0	1.0	2.0

[표 18]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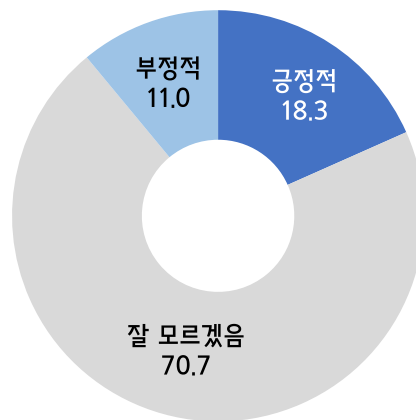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질배출부 과금 및 통합배출 부과금	공공폐수처 리시설 설치 부담금	석면피해 구제 부담금	대기배출부 과금 및 통합배출 부과금	특정물질 제조·수 입 부담금	
전 체	(300)	1.0	0.7	0.7	0.3	0.3	0.3	
업종	제조업	(211)	1.4	0.5	0.5	0.5	-	0.5
	비제조업	(89)	-	1.1	1.1	-	1.1	-
소재지	수도권	(149)	1.3	-	0.7	-	-	0.7
	비수도권	(151)	0.7	1.3	0.7	0.7	0.7	-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	-	-	-	-	-
	10~50명 미만	(107)	-	0.9	0.9	-	0.9	-
	50~100명 미만	(97)	-	1.0	1.0	-	-	-
	100명 이상	(46)	6.5	-	-	2.2	-	2.2
매출액	100억 미만	(102)	-	1.0	1.0	-	1.0	-
	100~200억 미만	(97)	1.0	1.0	1.0	-	-	-
	200억 이상	(101)	2.0	-	-	1.0	-	1.0

4) 정부 부담금 운용 평가

- 정부의 부담금 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0.7%로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18.3%), ‘부정적’(11.0%)로 나타남
- 업종별 결과 비제조업의 ‘긍정적’ 평가가 30.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재지별 결과 수도권이 비수도권 대비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종업원 수가 적을수록 정부 부담금 운영 평가가 긍정적임

[그림 18] 정부 부담금 운용 평가

(base : 전체(n=300), 단위 : %)



[표 19] 정부 부담금 운용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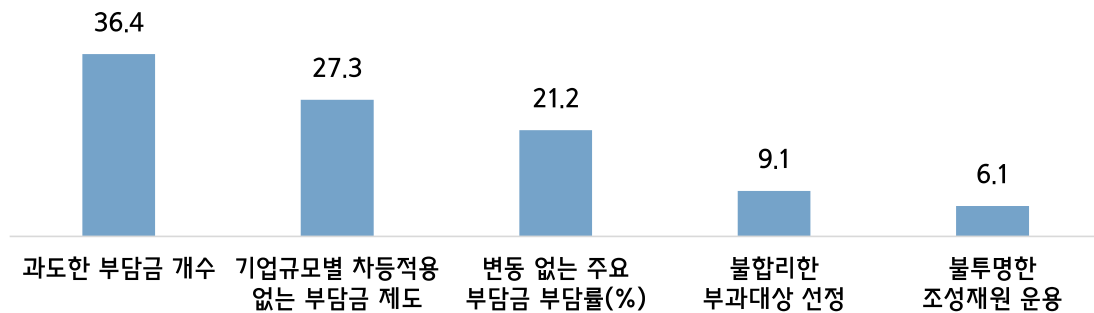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긍정적	잘 모르겠음	부정적	
전 체	(300)	18.3	70.7	11.0	
업종	제조업	(211)	13.3	75.8	10.9
	비제조업	(89)	30.3	58.4	11.2
소재지	수도권	(149)	25.5	67.1	7.4
	비수도권	(151)	11.3	74.2	14.6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30.0	60.0	10.0
	10~50명 미만	(107)	19.6	68.2	12.1
	50~100명 미만	(97)	15.5	69.1	15.5
	100명 이상	(46)	8.7	91.3	-
매출액	100억 미만	(102)	32.4	54.9	12.7
	100~200억 미만	(97)	9.3	75.3	15.5
	200억 이상	(101)	12.9	82.2	5.0

4-1) 부정적 평가 이유

- 정부 부담금 운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부담금 개수’(36.4%)이며, 다음은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없는 부담금 제도’(27.3%), ‘변동 없는 주요 부담금 부담률’(21.2%) 순으로 이어짐
- 종업원 수 10~50명 미만, 매출액 200억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없는 부담금 제도’ 응답이 4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9] 부정적 평가 이유

(base : 정부 부담금 운용 평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n=33), 단위 : %)



[표 20] 부정적 평가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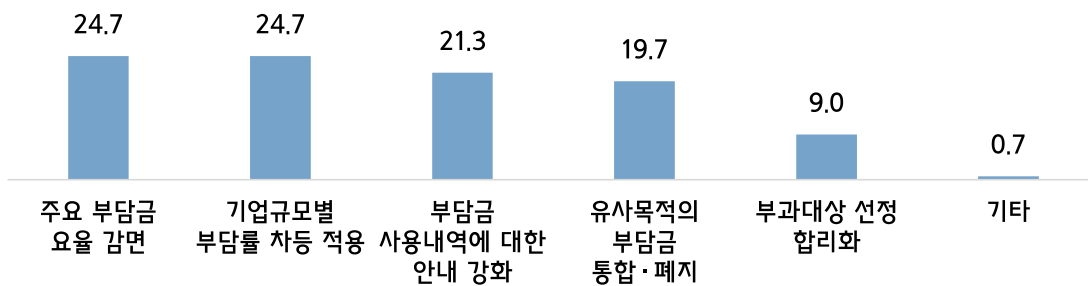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과도한 부담금 개수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없는 부담금 제도	변동 없는 주요 부담금 부담률 (%)	불합리한 부과대상 선정	불투명한 조성재원 운용	
전 체	(33)	36.4	27.3	21.2	9.1	6.1	
업종	제조업	(23)	30.4	26.1	26.1	13.0	4.3
	비제조업	(10)	50.0	30.0	10.0	-	10.0
소재지	수도권	(11)	45.5	27.3	18.2	-	9.1
	비수도권	(22)	31.8	27.3	22.7	13.6	4.5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	40.0	20.0	20.0	-	20.0
	10~50명 미만	(13)	46.2	46.2	7.7	-	-
	50~100명 미만	(15)	26.7	13.3	33.3	20.0	6.7
매출액	100억 미만	(13)	38.5	23.1	23.1	7.7	7.7
	100~200억 미만	(15)	40.0	26.7	13.3	13.3	6.7
	200억 이상	(5)	20.0	40.0	40.0	-	-

5) 부담금 제도 개선 사항

- 부담금 제도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요 부담금 요율 감면’(24.7%)과 ‘기업 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이 동물로 높게 나타남. 다음은 ‘부담금 사용 내역에 대한 안내 강화’(21.3%), ‘유사목적의 부담금 통합·폐지’(19.7%) 순으로 이어짐
- 비제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30.3%)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0] 부담금 제도 개선 사항

(base : 전체(n=300), 단위 : %)



[표 21] 부담금 제도 개선 사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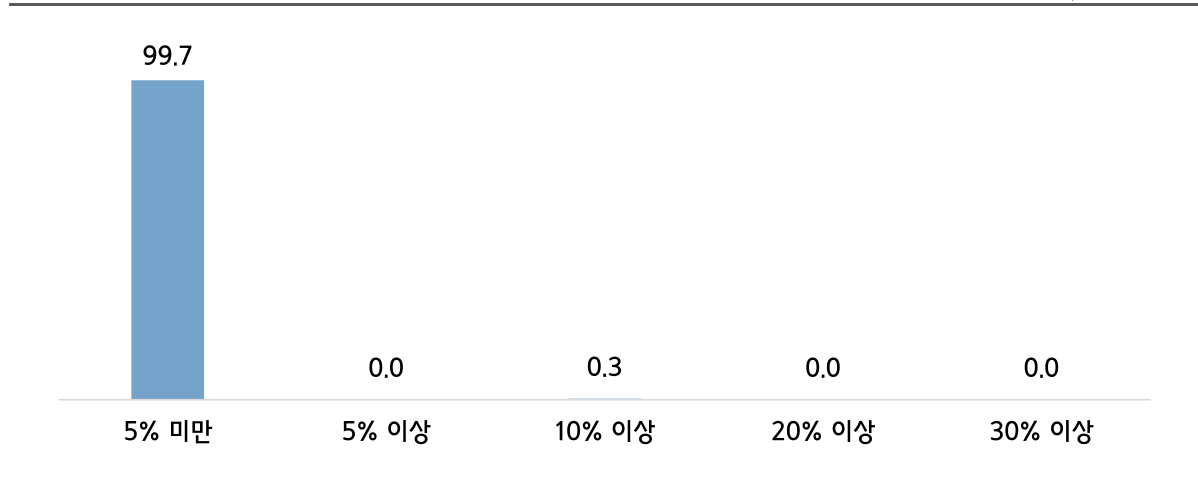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주요 부담금 요율 감면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	부담금 사용내역에 대한 안내 강화	유사목적의 부담금 통합·폐지	부과대상 선정 합리화	기타
전 체	(300)	24.7	24.7	21.3	19.7	9.0	0.7
업종	제조업 (211)	27.5	22.3	22.3	19.0	8.5	0.5
	비제조업 (89)	18.0	30.3	19.1	21.3	10.1	1.1
소재지	수도권 (149)	28.9	20.8	23.5	21.5	4.7	0.7
	비수도권 (151)	20.5	28.5	19.2	17.9	13.2	0.7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20.0	22.0	22.0	24.0	10.0	2.0
	10~50명 미만 (107)	21.5	27.1	22.4	18.7	9.3	0.9
	50~100명 미만 (97)	24.7	26.8	19.6	19.6	9.3	-
	100명 이상 (46)	37.0	17.4	21.7	17.4	6.5	-
매출액	100억 미만 (102)	20.6	26.5	24.5	17.6	9.8	1.0
	100~200억 미만 (97)	20.6	23.7	18.6	25.8	11.3	-
	200억 이상 (101)	32.7	23.8	20.8	15.8	5.9	1.0

6) 매출액 대비 2022년 지출한 부담금 비중

- 2022년에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매출액 대비 ‘5% 미만’(99.7%)임

[그림 21] 매출액 대비 2022년 지출한 부담금 비중

(base : 전체(n=300), 단위 : %)



[표 22] 매출액 대비 2022년 지출한 부담금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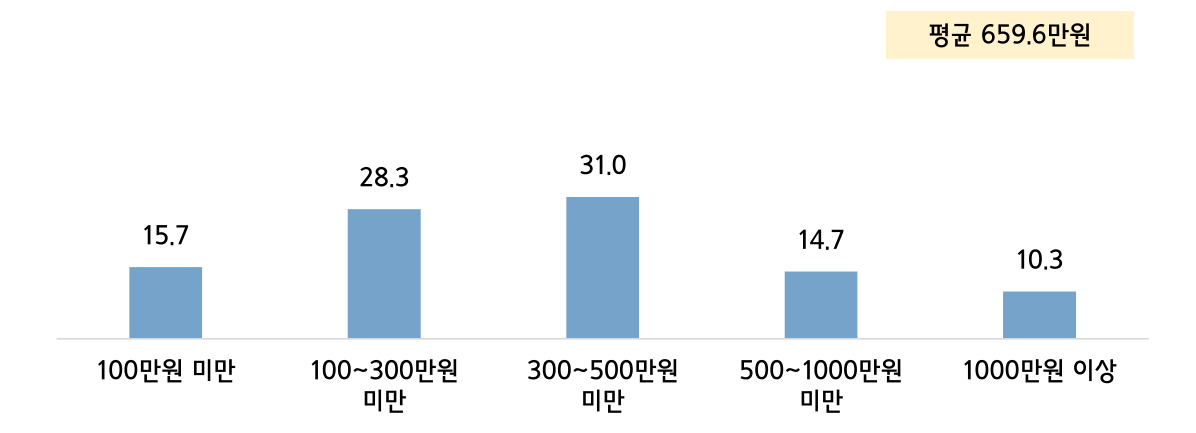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5% 미만	10% 이상
전 체	(300)	99.7	0.3
업종	제조업	(211) 99.5	0.5
	비제조업	(89) 100.0	-
소재지	수도권	(149) 99.3	0.7
	비수도권	(151) 100.0	-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100.0	-
	10~50명 미만	(107) 99.1	0.9
	50~100명 미만	(97) 100.0	-
	100명 이상	(46) 100.0	-
매출액	100억 미만	(102) 100.0	-
	100~200억 미만	(97) 99.0	1.0
	200억 이상	(101) 100.0	-

7) 2022년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

- 2022년에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6만원에 해당함. 구간을 나눠보면 ‘300~500만원 미만’(31.0%), ‘100~300만원 미만’(28.3%)에 해당함
- 업종별 결과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을 지출한 반면, 비제조업은 136만원으로 업종별 차이를 보임
- 소재지별 결과 수도권은 869만원, 비수도권은 452만원으로 수도권의 부담금 지출이 더 높았음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매출액 200억 이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은 부담금 총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 2022년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

(base : 전체(n=300), 단위 : %)



[표 23] 2022년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

(단위 :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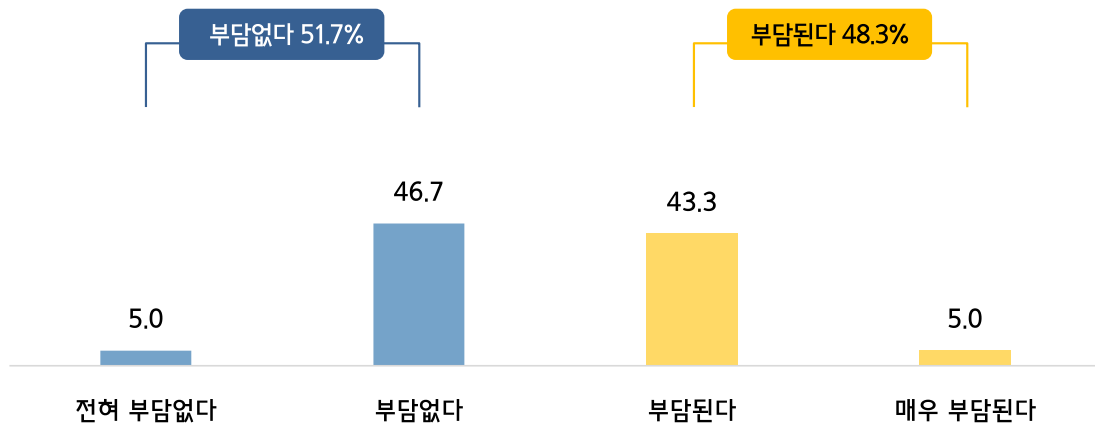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300)	15.7	28.3	31.0	14.7	10.3	659.6	
업종	제조업	(211)	0.9	25.6	38.9	19.9	14.7	880.2
	비제조업	(89)	50.6	34.8	12.4	2.2	-	136.5
소재지	수도권	(149)	18.1	24.8	32.2	10.7	14.1	869.9
	비수도권	(151)	13.2	31.8	29.8	18.5	6.6	452.0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64.0	30.0	4.0	2.0	-	99.4
	10~50명 미만	(107)	14.0	50.5	29.9	3.7	1.9	614.1
	50~100명 미만	(97)	-	16.5	57.7	20.6	5.2	525.5
	100명 이상	(46)	-	-	6.5	41.3	52.2	1,657.0
매출액	100억 미만	(102)	43.1	34.3	18.6	3.9	-	168.0
	100~200억 미만	(97)	3.1	40.2	41.2	9.3	6.2	807.7
	200억 이상	(101)	-	10.9	33.7	30.7	24.8	1,013.7

8) 부담금 총액의 부담 정도

- 현재 지출하고 있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 응답이 48.3%(매우 부담된다 5.0% + 부담된다 43.3%)에 해당함
- 업종별 결과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부담을 더 느끼고 있음
- 소재지별 결과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부담 정도가 높았음
-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매출액이 높을수록 부담금 총액에 대한 부담이 높았음

[그림 23] 부담금 총액의 부담 정도

(base : 전체(n=500), 단위 : %)



[표 24] 부담금 총액의 부담 정도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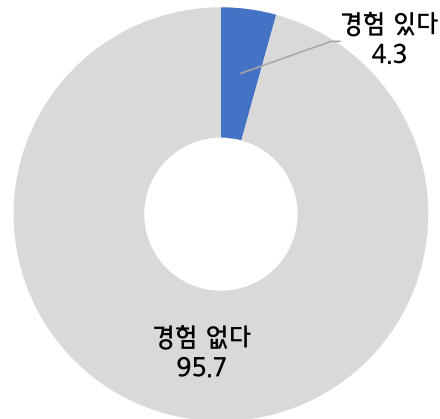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전혀 부담없다 ①	부담없다 ②	부담된다 ③	매우 부담된다 ④	부담없다 (①+②)	부담된다 (③+④)	평균 (4점 평균)	
전 체	(300)	5.0	46.7	43.3	5.0	51.7	48.3	2.48	
업종	제조업	(211)	2.8	39.8	50.2	7.1	42.7	57.3	2.62
	비제조업	(89)	10.1	62.9	27.0	-	73.0	27.0	2.17
소재지	수도권	(149)	7.4	49.7	41.6	1.3	57.0	43.0	2.37
	비수도권	(151)	2.6	43.7	45.0	8.6	46.4	53.6	2.60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16.0	58.0	24.0	2.0	74.0	26.0	2.12
	10~50명 미만	(107)	4.7	44.9	43.0	7.5	49.5	50.5	2.53
	50~100명 미만	(97)	2.1	45.4	47.4	5.2	47.4	52.6	2.56
	100명 이상	(46)	-	41.3	56.5	2.2	41.3	58.7	2.61
매출액	100억 미만	(102)	10.8	49.0	38.2	2.0	59.8	40.2	2.31
	100~200억 미만	(97)	3.1	47.4	38.1	11.3	50.5	49.5	2.58
	200억 이상	(101)	1.0	43.6	53.5	2.0	44.6	55.4	2.56

9) 부담금 납부 애로 경험 여부

- 부담금 납부에 따른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95.7%)가 대부분임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경험 없다'가 100.0%에 해당함

[그림 24] 부담금 납부 애로 경험 여부

(base : 전세(n=300), 단위 : %)



[표 25] 부담금 납부 애로 경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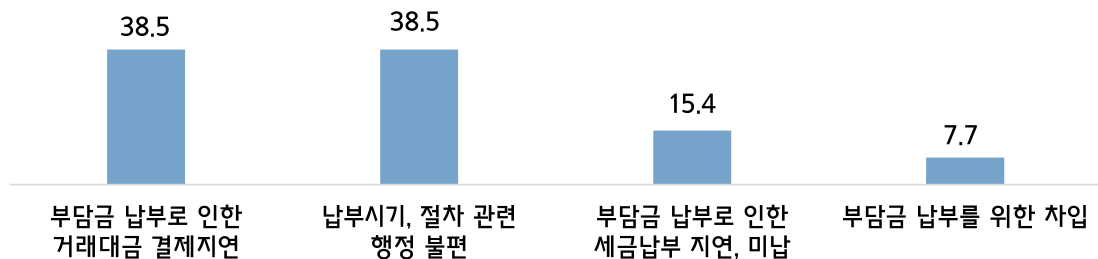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전 체		(300)	4.3	95.7
업종	제조업	(211)	5.2	94.8
	비제조업	(89)	2.2	97.8
소재지	수도권	(149)	1.3	98.7
	비수도권	(151)	7.3	92.7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50)	4.0	96.0
	10~50명 미만	(107)	5.6	94.4
	50~100명 미만	(97)	5.2	94.8
	100명 이상	(46)	-	100.0
매출액	100억 미만	(102)	5.9	94.1
	100~200억 미만	(97)	5.2	94.8
	200억 이상	(101)	2.0	98.0

9-1) 부담금 납부 시 겪은 애로사항

- 부담금 납부 시 겪은 애로사항으로 ‘부담금 납부로 인한 거래대금 결제지연’(38.5%)과 ‘납부시기, 절차 관련 행정 불편’(38.5%)이 동물로 높게 나타남. 이어서 ‘부담금 납부로 인한 세금납부 지연, 미납’(15.4%), ‘부담금 납부를 위한 차입’(7.7%) 순으로 이어짐

[그림 25] 부담금 납부 시 겪은 애로사항

(base : 부담금 납부 시 애로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n=13), 단위 : %)



[표 26] 부담금 납부 시 겪은 애로사항

(단위 : %)

구 분	사례수	부담금 납부로 인한 거래대금 결제지연	납부시기, 절차 관련 행정 불편	부담금 납부로 인한 세금납부 지연, 미납	부담금 납부를 위한 차입	
전 체	(13)	38.5	38.5	15.4	7.7	
업종	제조업	(11)	36.4	36.4	18.2	9.1
	비제조업	(2)	50.0	50.0	-	-
소재지	수도권	(2)	50.0	50.0	-	-
	비수도권	(11)	36.4	36.4	18.2	9.1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	(2)	-	50.0	-	50.0
	10~50명 미만	(6)	66.7	16.7	16.7	-
	50~100명 미만	(5)	20.0	60.0	20.0	-
매출액	100억 미만	(6)	33.3	66.7	-	-
	100~200억 미만	(5)	60.0	-	20.0	20.0
	200억 이상	(2)	-	50.0	50.0	-

10) 부담금 제도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 부담금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세금이 부담스럽다’, ‘전기료 감면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조사됨

[표 27] 부담금 제도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base : 전체(n=300), 단위 : %)

NO	의견	비율
1	세금이 부담스럽다	0.7
2	전기료 감면이 필요하다	0.7
3	수도요금이 비싸다	0.3
4	환경부담금이 비싸다	0.3
5	인내가 미흡하다	0.3
6	기업별 매출액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0.3
7	중소기업 영업이익이 안 될 때 유예가 필요하다	0.3
8	직원 수 변경이나 규모변경 시 유예가 필요하다	0.3
9	분납으로 했으면 한다	0.3
10	없음	96.3

[참고] 정부 부처별 부담금

부처별(90개)	부담금명
환경부(20)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재활용부과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환경개선부담금,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부담금,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회수부과금(전기·전자제품),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익자부담금(댐건설관리법)
국토교통부(15)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도로법), 도시개발구역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입지법), 과밀부담금, 시설부담금(물류시설법),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소음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택지법)
산업통상자원부(9)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광물수입·판매 부과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금융위원회(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문화체육관광부(7)	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임차료에 대한 부가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해양수산부(7)	수산자원조성금, 방제분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수산물 수입이익금,
농림축산식품부(7)	농지보전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농안법),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대체초지조성비, 축산물수입이익금, 양곡수입이익금
기획재정부(2)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외환건전성부담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
외교부(2)	국제교류기여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고용노동부(2)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중소벤처기업부(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기술보증기금출연금
산림청(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임산물수입이익금
교육부(1)	학교용지부담금
행정안전부(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보건복지부(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식품의약품안전처(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